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

2026. 2. 2.(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국회의원 고민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2026년 2월 2일(월) 14:00 - 17: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개회식

사회: 김영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4:00~14:20	개회사	박상완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환영사	고민정 국회의원
	축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1부 주제발표

사회: 김영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4:20~14:40	거버넌스	초광역 통합 거버넌스와 교육자치의 재설계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
14:40~15:00	법·제도	행정통합 시대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5:00~15:20	학교·교원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운영 및 교원 인사 방안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수

휴식 시간(15:20~15:30)

2부 토론

좌장: 고 전 제주대학교 교수

15:3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폐회

목 차

[거버넌스]

초광역 통합 거버넌스와 교육자치의 재설계	1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	

[법 · 제도]

행정통합 시대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11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학교 · 교원]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운영 및 교원 인사 방안	27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

거버넌스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과 교육자치 재설계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 포럼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과 교육자치 재설계

나 민주

충북대학교 교수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소장

교육부 정책지원연구소
kle 한국지방교육연구소
KOREA LOCAL EDUCATION INSTITUTE

2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빠른 행정통합 추진, 부족한 교육자치 설계

■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논의 및 추진 본격화·확대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이하 대전충남법안)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가칭)」 초안(이하 광주전남초안)
- 부산·경남 행정통합,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중
- 기존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세종)

대전·충남
2025년 11월 공동선언, 2026년 7월 출범 목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발의)

광주·전남
2026년 1월 공동선언, 2026년 7월 출범 목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

대구·경북
2026년 1월 행정통합 재추진 합의, 2026년 7월 출범 목표



■ 행정통합은 ‘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거버넌스’ 재설계

- 행정통합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에 초점, 효율의 언어로 추진될수록 **교육자치는 ‘부수외제’로 밀릴 위험이 있음**
- **교육자치의 관점에서의 심층적 논의 공백**은 통합 이후 지역사회 **갈등과 교육의 정치화로 인한 혼란 초래** 우려
- 이 글에서는 최근 구체화·확대되고 있는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지방교육자치제의 관점에서 분석, 쟁점 검토, 발 전방향 모색
- 이를 위해 대전충남법안, 광주전남초안을 중심으로 관련조문 비교,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교육자치 관련사례 참고, 5극3특 비전 및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목표 달성 측면 감안

교육자치의 성격과 의의

-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본질에 대하여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중시
-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기능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지리적) 자치가 결합된 형태로, ‘중앙-지방관계’, ‘지방-지방관계’의 두 차원이 포함된 이중적 자치
-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 기관분리형(교육감 중심 집행기관)·기능분권형(교육사무의 독자성)으로 설계된 자치로서 주민선출에 기초한 정당성과 전문성·중립성 보장을 동시에 요구받는 이중 규범의 자치
-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직, 인사, 재정 측면에서 자주성이 보장 필요
-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는 제도와 운영, 분권과 협력, 그리고 입법, 사무, 조직, 인사,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 특히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 지역별 교육정책 및 아젠다,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 및 인력 자율적 운용을 통해 지방교육의 특수성이 신장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 확대

교육자치의 개념과 영역: 이론적 검토

- “당해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조직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권영성, 2010)로 보는 협의의 관점
- “교육제도의 운영에서 중앙정부(교육부)와 지방정부(시·도교육청)의 권한 관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관계, 시·도청과 교육청의 관계,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규정하는 제도”(김성열, 2018)로 보는 광의의 관점
- “지방교육자치 관련법령, 교육감제, 교육위원회제,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가 주요 영역(나민주, 고전, 김병주, 김성기, 김용, 박수정, 송기창, 2018)
- 일반자치에서는 기관자치-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중앙-지방, 지방-지방, 의회-집행부, 정부-주민 간의 관계가 핵심내용(김순은, 2015)
- 지방자치의 쟁점으로는 자치구역, 자치권, 주민참여, 정부간 관계, 지방선거,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집행기관, 재정조정제도, 지역발전, 자치역량, 주민통제, 지방정부간 협력과 갈등, 지역발전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이달곤 외, 2012)

교육자치 재설계 논의의 주제

-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핵심질문은 통제권, 혹은 결정권의 문제로써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결정하는가'
-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협력)에 초점을 두면, 주제, 영역, 방법, 목적의 네 가지 관점 분류 가능(황준성 외, 2023)

구분	영역	주제
누가 (주체)	기관	교육감/ 시도지사/ 교육청(부서)/ 시도청(부서)/ 지방의회 등
	구성원	주민/ 학부모/ 학생/ 교원/ 직원/ 협의체/ 공동센터 등
무엇 (영역)	자치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사무)/ 자치재정권
	협력 분야	지역사회돌봄/ 학업중단청소년지원/ 학업배려대상지원(저소득층, 다문화 등)/ 지역인재육성/ 진로체험/ 통학환경/ 공간시설 공유/ 지역사회이해교육/ 평생·고등·직업교육/ 인적교류/ 공동사업성과관리/ 사업공동협의체/ 중간조직 설치(추진단, 센터 등), 교육발전특구 등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방법, 내용)	기추진 방안	교육지원조례 제정/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지방교육정책협의회/ 교육협력관계 등
	제안된 방안	법인격 부여/ 기초단위 교육자치/ 독립된 교육위원회/ 독자적 지방교육재정 재원/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도지사 에 의한 임명제/ 기관 통합/ 인사 교류/ 완전 통합(교육자치 폐지)/ 비정당인 기간 확대/ 교육행정경력 확대/ 합의제 집행기관화 등
왜 (목적)	교육자치	자주성(부당한 외부 간섭의 배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전문성(교육 전문직 인사의 독립성, 교육전문가 참여, 교육감의 교육경력 충족,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충족, 교육내용의 전문성)
	지방자치	정치적 중립성(정치적 개입의 배제, 교육의 정치적 수단화에 대한 경계)
		분권성(자치사무의 존재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 자치기관의 존재 및 기관 간 상호 견제)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지역교육의 특수성 제고,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이번 논의의 기준점과 범위

- **헌법상 교육자치의 원리 충족 → 논리적 정합성 검토**
 - 헌법 제31조제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6항(교육제도,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정주의)
 - 헌법적 가치 균형(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 “교육자치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만을 내세워 성급하게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영역”
- **5극3특 비전 및 국정 목표 달성 → 지역성장·발전의 실효성 평가 및 제고**
 - 초광역 행정체제, 행정통합은 5극3특 추진전략의 일환, 자치분권기반 국가균형성장을 비전
 - 권역 거점중심+네트워크 연계, 규모의 확장, 경쟁력 유지 임계규모 내재화 등을 추진전략
 - 권역 단위로 성장엔진 육성-인재양성-산·학·연 혁신거점을 “삼각 축”
 - 교육은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핵심 요소
- **행정통합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 쟁점과 대안 도출, 교육자치 재설계 논의**
 - 대전충남법안(대전충남특별시), 광주전남초안(광주전남특별시)을 중심으로 관련조문 비교
 -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세종) 교육자치 관련사례(가능성, 위험성 참고)
 - 주요 쟁점으로 교육감 선출방법, 관할구역 및 행정계층 적정성, 견제와 균형 장치, 완결형 지역교육 생태계 검토

추진 현황 및 사례: 법률(안) 비교 → 심층 논의의 공백 지점

구분	대전충남법안	광주전남초안	제주특별법(참고)
교육감 선출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민 직선 규정 (동시 선거)	주민 직선
부교육감 제도	해당 없음	3인 (대통령 1 + 교육감 2)	해당 없음
재정 특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교부 (25% 증액, 10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교부	보통교부금 일정률(1.57%) + 특별지원
교육위원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위원회 + 교육의원 5명

쟁점(1) 누가 이끌 것인가? 교육감 선출 방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 통합 논의 초기,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도입 여지가 일부 법안에서 거론되면서 교육계 반발, 교육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직선제 개편 논의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됨(EBS, 2026.01.19.)
- 광주전남초안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직선 원칙 명문화), 대전충남안은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음'(선출방식 변경 가능), 참고로 제주특별법은 주민 직접선거(지방선거와 같은 날 선거 실시) 명시됨, 전북, 강원특별법은 명문 규정 없음(교육자치법 적용)

■ 대안 검토 및 설계 방향

-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 제도선택이 아니라, 주민통제 강도(민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시장-교육감 권력관계(권력분산), 책임소재 등을 동시에 바꾸는 **현정적 설계 변경사항**임
- 직선제는 주민통제와 상징성이 강하지만, 선거과정에서 과도하게 정치화될 위험이 있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는 행정일관성·책임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측면에서 정당성 논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음
- 광주전남초안, 제주특별법과 같이 **교육감 직선제 명문화**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의 헌법적 가치 균형이 중요함

Issue 01: Who Leads? 민주적 정당성 확보

행정 효율성 논리 •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도입 주장. • 목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일원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헌법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현정적 설계 변경'입니다.	교육 자치 논리 • 주민 직선제 필수. • 목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거대 단체장'에 대한 견제.
Ⓞ 제안: 교육감 주민 직선제 명문화 필수 광주전남 초안과 같이 직선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Issue 02: Jurisdiction & Hierarchy - 과잉 방지와 분권 9

쟁점(2) 어떻게 나눌 것인가?

관할구역 및 행정계층의 적정화와 분권



■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 지역별로 “통합 교육감 1인 체제” 합의/논쟁, “복수 교육감” 요구 등 온도차가 존재함(EBS, 2026.01.19.)
- 통합 논의에서 크게 [A안] 통합 교육감 1인 체제; [B안] 복수 교육감(권역별 선출) 또는 단계적 통합; [C안] 교육감 1인 + 권역별 강력한 집행책임(부교육감/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음
- 광주전남초안은 부교육감 3명 규정(대통령 임명 정무직 국가공무원 1명, 특별시교육감 임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대전충남안은 별도 규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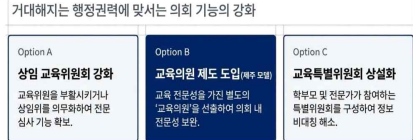
■ 대안 검토 및 설계 방향

- 초광역 단일 교육감은 관할영역의 비대화, 대표성(지역·학교급·도농 격차)과 접근성(민원·현장지원) 약화 우려
- 광범위·강화된 교육감 권한 적정 배분 → 초광역 사무 vs 생활권 사무 및 권한 배분 명확화, 권역형/분권형 대안 함께 검토 필요함(보충성 원칙) * 초광역은 “공동으로 해야만 효과가 나는 사무” 집중, 학교현장과 생활권 문제는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해결
- 단기적으로는 **복수 부교육감 임명**(인구 등 고려 3명 내외, 국가직+지방직), 부교육감 권역책임 강화(광주전남초안)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분권, 권한·사무 이양(생활권중심, 학교현장지원), **교육장 공모제 확대** 및 직선제 검토
- 추가적으로 **기초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지원청단위 vs 기초자치체단위 vs **생활권단위(중범위)**
→ 학생, 학교, 교직원, 거리 등 교육행정부수요 고려하여 구역 재설정

Issue 03: Checks & Balances - 전문적 견제 장치의 복원 10

쟁점(3) 누가 감시할 것인가?

전문적 견제와 균형 장치의 내재화



✓ 일반 의원만으로는 복잡한 교육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견제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 초광역단위로 행정통합에 따라 지방의회-시도지사-교육감의 견제와 균형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이 관점에서 교육위원회 제도의 재조명이 필요함
- 대전충남안과 광주전남초안 모두 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조문은 없음. 참고로 제주특별법에서는 도의회 내에 교육·학예 사항 심의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두었음. 세종특별법에서는 교육위원회 정수를 5명으로 규정함
- 제주의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실험은 교육을 의회 내 별도 의제(중시), 교육재정·정책에 대한 명시적 견제수단, 교육 전문성을 의회구조에 반영한 제도적 실험(고전, 2023; 강인태, 현승아, 2020)

■ 대안 검토 및 설계 방향

- 통합으로 초광역단체의 행정·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의회가 예산·조례·감사 등에서 교육청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예·결산 전문심사, 교육정책 연속성 확보, 교육감-집행부에 대한 정보비대칭 완화)
- 교육예산 규모가 크고(인건비·시설), 법·제도 복잡, 이해관계자(학부모·교원·학교) 다층적 → 전문적 심사 없이는 의회통제 형식화, 각종 교육사업·정책관련 갈등·분쟁 조정 필요
- 교육자치의 민주적·전문적 통제 강화: 의회 내 전문 심사·감사 구조의 제도화(상임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수요자위원회(학부모·교원·전문가), 교육특별위원회 상설화), 더 나아가 교육의원제(일출), 독립형 교육위원회제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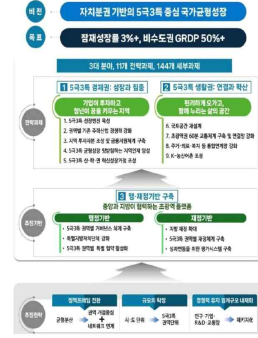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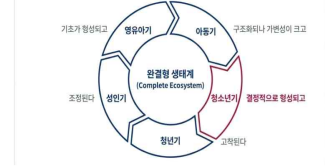
쟁점(4)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가? 완결형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 5국3특 전략의 지역인재 양성(3대 추진과제)=서울대10개 만들기 및 라이즈 체계 재구조화 + 지역산업연계 인재양성체제 구축+지역인재 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 (권역별 전략산업-대학-연구기관-직업교육 결합)
- 행정통합으로 교육특례를 활용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광주전남초안, 대전충남안), 외국인 유학생, 초·중·고-대 학연계 등(광주전남초안) 적극 추진 예상

대안 검토 및 설계 방향

- 대학생(성인)대상 교육-취업-주거 지원만으로는 지역 취업-정주에 한계 (**중등교육단계 중요** → 투자 강화 필요) * **인재유형 (AAA vs ABB vs BAB vs BAA)**
* 개인의 선호(성향·취향)은 언제 형성되는가? 음식·음악·정치·문화·학문적 관심의 방향성과 선택 상황에서 경향성은
- 라이즈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교육감·대학총장의 적극적 참여 유도 (예컨대 **초광역 라이즈센터 공동법인화**: 특별시+특별시교육청+사업참여대학)
- 초광역단위 인재육성위원회 법제화**(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거점국립대학총장 등), 생활권단위 교육협력체 운영 → 유-초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성 강화



“영유아기에 기초가 형성되고, 아동기에 구조화되거나 가변성이 크고, 청소년기에는 결정적으로 형성되고, 청년기에 고착된다. 성인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지역 선호와 정체성)

지역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의 핵심동력, 교육자치 실현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 자치분권기반의 국가균형성장 비전

- 권역 거점중심, 규모 확장, 임계규모 내재화 등을 추진전략 → 빠른 행정통합에 집중, 교육 부수화·수단화 우려
- 권역단위로 성장엔진 육성-인재양성-산·학·연 혁신거점을 “삼각 축” → 교육자치 관점에서 정밀한 설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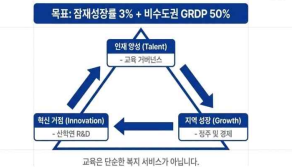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목표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 한명 한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는 수준 높은 교육 중요
- 행정통합, 초광역 통합행정 체제로 전환은 단순한 권역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의제

초광역 교육 거버넌스, 교육자치 재설계(입법화)의 원칙과 방향

- 교육자치 명문화**: 교육감 직선제 명문화, 교육재정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초광역과제(인재·산학연·교통생활권)는 공동책임 구조 설계 → 교육을 초광역행정 ‘여러 영역의 하나’로 다루기 vs 하나의 ‘핵심 축’으로 중시
- 관할구역 및 계층 적정화**: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교육장의 공모제 확대, 직선제 도입, 기초단위 교육자치체 검토
- 건제와 균형 장치 강화**: 교육상임위 강화, 교육특별위원회, 교육의원제, 독립형 교육위원회 검토
- 완결형 지역교육 생태계**: 중등교육 강화 및 연계, 초광역 라이즈센터 공동법인화, 초광역 인재육성위원회 법제화
- 교육분야를 공백지대, 미완영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대표성·민주성·적정성·정합성·보충성 측면에서 명확화
- 초광역단위 다주체간 참여·협력에서 상시 발생가능한 권한·사무·재정·성과의 경계 명확화, 분쟁조정 절차 내장도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차원의 “지방교육자치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시급

The Vision: 5국 3특 전략의 엔진으로서의 교육 12



감사합니다

The North Star: 왜 교육자치가 중요한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자치의 이중적 성격 (Dual Nature)

- 기능적 자치 (Functional):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및 전문성 보장.
- 구역적 자치 (Areal): 지역 주민 및 영토와의 연계성.

“교육자치는 단순한 행정 분권이 아니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고 학생을 위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Principles for Redesign: 정책 체크리스트

- | | |
|---|--|
| <p>01
자치권 보호 (Protect Autonomy)</p> <p>교육감 직선제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p> | <p>02
규모의 최적화 (Optimize Scale)</p> <p>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및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를 통한 한강 밀착형 행정 구현.</p> |
| <p>03
균형과 견제 (Ensure Balance)</p> <p>교육전문위원 또는 교육의원 제도를 통한 의회의 전문적 감시 기능 복원.</p> | <p>04
생태계 구축 (Build Ecosystems)</p> <p>지자체-교육청-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법인 설립 및 고교-산업 연계 강화.</p> |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

법 · 제도

행정통합 시대의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김 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행정통합 시대의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2026. 2. 2.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목차

- 01 맥락과 관점
- 02 행정통합과 지방교육 운영 구조
- 03 행정통합과 교육재정
- 04 행정통합과 교육법 체계

교육자치의 다양한 명칭과 개념

지방교육자치

교육위원회 제도

School Governance

Education Governance

⇒ 교육 예외주의(Educational Exceptionalism)

교육 예외주의의 출현과 동요: 출현

미국의 교육 예외주의

- 미국에서도 최초의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의 일부
- 20세기 초 정치인의 부패와 협잡에 대한 진보주의 교육의 대응

→ 일반행정(general-purpose municipal governance)에서
교육행정(school governance)의 분리

School District, Board of Education, Superintendent 제도의 성립

교육 예외주의의 출현과 동요: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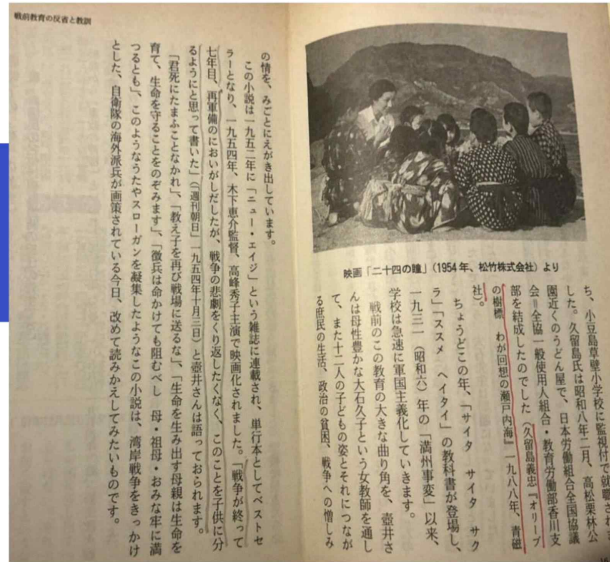
- 교육의 세계는 정치의 세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오랜 믿음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신화)
- 성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가치 분화가 일어나지만, 아이들은 하나의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공통된 바람
- 학교는 공동체의 지배적 규범을 확장하는 공간,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자는 지역의 재산 가치를 높일 것
- 교육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경로의존, 철의 삼각(iron triangle), 지지적 정당 근거 (supportive rationales)에 따라 100년 이상 유지되어 옴

교육 예외주의의 출현과 동요: 출현

첫째로 세입금 관리 면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조치들이다. 일체의 교육 관계 예산 세 입금은 이를 모두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시켜야 함에도 시·군에 따라서는 그 일부를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 등이 수시로 일반행정 부문에 유용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로 교육관계 공무원의 정원을 기동배치(機動配置)라는 명목으로 일반행정부서에 배치시키는 예는 거의 다반사화되어 있으며... 학교 수용비를 유용하여 일반행정 부서의 임시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례조차 있다 (김승한, 1963).

교육 예외주의의 출현과 동요: 출현

戦争を歌った こどもたち



교육 예외주의의 출현과 동요: 동요

- 미국에서는 일부 주민의 교육 요구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 (학력 향상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둘러싼 갈등도 제기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 일본에서는 이시메 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온건한 대응에 주민이 불만을 제기



- 미국에서는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일본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교육위원회 구성 및 관여가 대폭 확대됨

교육 예외주의의 출현과 동요: 동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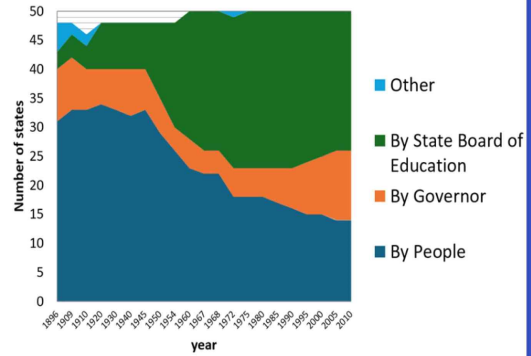
Mayoral Control in Chicago & New York City



Paul Vallas & Richard M. Daley



Michael Bloomberg & Joel Klein



Selection of State Level Superintendents

교육 예외주의의 출현과 동요: 동요



지역별 통합교육감 추진 현황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통합·복수 교육감 두고 갈등	통합교육감 선출 예정
교육감 권한	교육감의 감사권 축소 추진	현행 유지
부교육감	2명	3명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 근거

<p>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자체 권력에서 교육 자치 보장 	<p>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 낮은 투
---	---

교육감 주민 직선제의 성과와 과제

성과

- 교육 분권과 지방교육의 특수성 구현
- 정책 경쟁 구조를 확립하여 교육정책의 품질 제고
- 교사 주도 학교변화 운동, 새로운 정책 출현

과제

- 약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 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관객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문제
- 지역 변동이 극심한 상황에서 학교 재배치, 농어촌교육 살리기 등 면에서 유능함을 입증해야 하는 교육행정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행정통합

-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저성장 구조 고착화 위기
- 성장의 틀을 재구축 (수도권 1극 --> 5극 3특)
- 교육, 지역 산업, 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
- 초광역 단위에서 성장 엔진을 만들고 제조업 AIX를 위한 인재 양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거점 형성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전체의 균등 발전, 삶의 질 제고
-> 기초 수준 교육자치 중요성

방향

제1단계 교육자치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한 교육분권과 정책 경쟁

제2단계 교육자치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초 수준 교육자치로의 진화

제2단계 교육자치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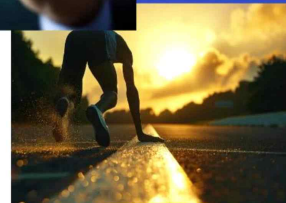
● 교육 예외주의의 양면성

- 전문성 존중, 재정 지원의 안정성
- 폐쇄적 체제, 좁은 시야



● 제2단계 교육자치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권 교육자치)

-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하여 사회의 중요한 문제 해결에 기여
- 더 넓은 교육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 교육자치를 강건하게 만드는 일



충남대전통합시법의 지방교육 체제 구상

제38조 ⑩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군·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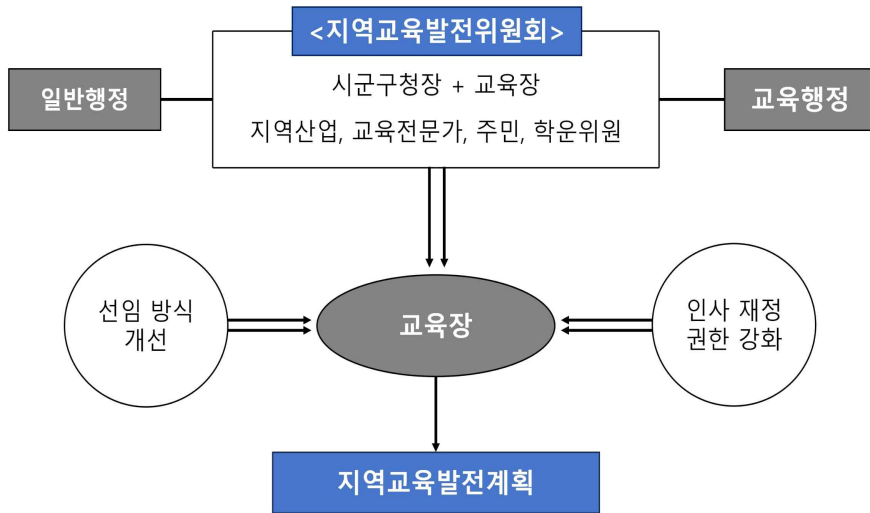
⑩ 교육장은 시·군·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충남대전통합시법의 지방교육 체제 구상

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0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조



향후 검토 과제

교육특구 정책과의 결합 방식 검토	새로운 지방교육 운영 구조 안착 과제	교육장 선임 등 제도 구체화 과제	임기, 비교원에게 교육장 개방 여부 등
고등학교 관할권, 교직원 전출입 동의권, 교직원 우선 지명권 등	교육장 권한 강화에 관한 구체적 검토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특구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과제	사립중등학교 한시적 해산 특례, (장기 근무) 교원 보수 우대 특례, 학교재정 지원 및 운영 특례 등

지역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



교육감 성명서에 대한 평가

3.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현재 제안된 개방형 공모직 전환 및 권한 위임 확대 방안은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 (2026.1.29.)

충남대전통합시법의 지방교육재정 구상

제57조(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내국세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및 제7조를 산정함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행정 통합과 교육재정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항게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방 행정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방수도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정부 국정 과제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행정 통합 논의에 불붙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박함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5대 35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는 구상도 처음으로 밝혔다.

[단독] '뜨거운 감자'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띄운다

수정 2025.08.06 09:43

김원진 기자 박상영 기자 김승이 기자

▶ 요약



5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2학기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행정 통합과 교육재정 문제

2024년 (75:25)	70:30 조정 시	65:35 조정 시
국세: 336조5,000억 지방세: 114조1,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	국세: 314조 지방세: 136조6,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조3,000억	국세: 293조 지방세: 157조6,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0조9,000억

교육감 성명서에 대한 평가

2.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정부의 현 제안은 통합 이전 수준의 예산 보장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 소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후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없는 통합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전 수준 보장'이라는 수동적 접근을 넘어,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를 촉구한다. (2026.1.29.)

행정통합과 교육법 체계 문제

교육특구, 범람이 우려된다 (교육트렌드, 2024)

‘특’이 붙은 음식은 대개 몇천 원이 비싸지만 푸짐하거나 맛이 좋다. ‘특별’하다는 것은 때로 시기나 경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 많은 사람이 몇천 원을 더 내더라도 ‘특’을 먹고자 한다. 만약, 내가 직접 가격을 내지 않고도 ‘특’을 먹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특별시 전성시대, 특별시아닌 시도는?

행정통합과 교육법 체계 문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1228호, 2005. 12. 23. 제정개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9. 23., 2014. 11. 19., 2017.

제2장 식재 <2016. 12. 13.>

제1절 식재 <2016. 12. 13.>

제4조 식재 <2016. 12. 13.>

제5조 식재 <2016. 12. 13.>

제2절 식재 <2016. 12. 13.>

제6조 식재 <2016. 12. 13.>

제7조 식재 <2016. 12. 13.>

제8조 식재 <2016. 12. 13.>

제9조 식재 <2016. 12. 13.>

제10조 식재 <2016. 12. 13.>

제10조의2 식재 <2016. 12. 13.>

18.>

[본조신설 2013. 4. 5.]

제7장 식재 <2016. 12. 13.>

제51조 식재 <2016. 12. 13.>

제52조 식재 <2016. 12. 13.>

제53조 식재 <2016. 12. 13.>

제54조 식재 <2016. 12. 13.>

제55조 식재 <2016.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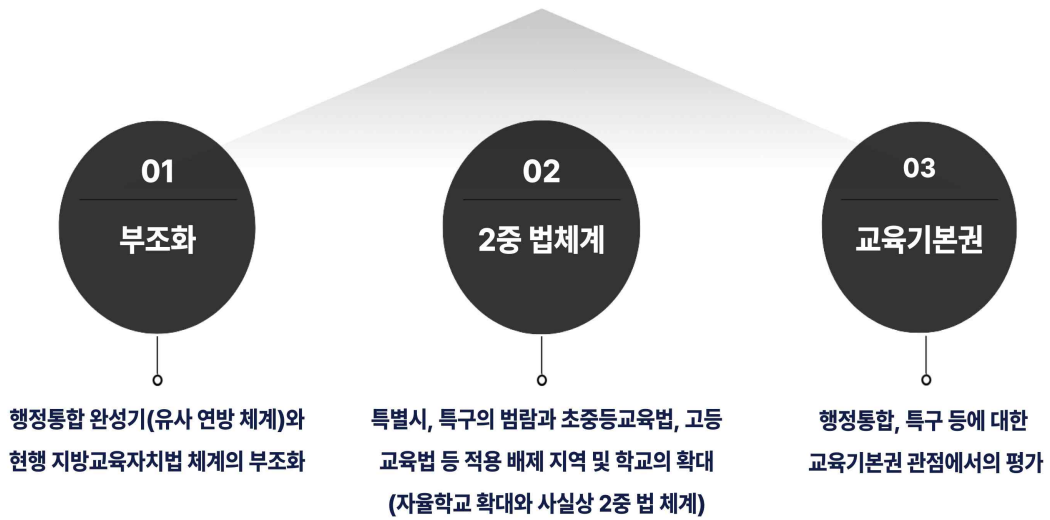
제56조 식재 <2016. 12. 13.>

제57조 식재 <2016. 12. 13.>

제58조 식재 <2016. 12. 13.>

제8장 별칙 <신설 2010. 2. 26.>

행정통합과 교육법 체계 문제



감사합니다

김 용(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

학교 · 교원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운영 및 교원 인사 방안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수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운영 및 교원 인사 방안

: 초광역 행정체제에서 필요한 교육 특례는?

2026. 2. 2.

박수정 (충남대학교)

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

2026. 2. 2. (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국교육재정정책학회 · 국회의원 고인정
한국교육인노총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 (사)창교육을위한한국학부모회
한국학사교육학부모네트워크 · 교육정책·다산연구소

개회식	사회 김영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개회사 박상현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참모사 고인정 국회의원
축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제발표	사회 김영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거버넌스	초광역 통합 거버넌스와 교육자치의 재설계 나원주 충북대학교 교수
법·제도	행정통합 시대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학교·교원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운영 및 교원 인사 방안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고건 제주대학교 교수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방교육경영
The Journal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
2025, Vol. 28, No. 4, pp. 151-178
<http://doi.org/10.23196/jlem.2025.28.4.00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환경 변화와 쟁점 탐색*

박수정(충남대학교/교수)**

요약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20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환경 변화를 정리하고 제도의 쟁점을 탐색하였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는 70년 넘게 일관된 지방자치와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론과 연계·협력론이 대두되었고, 2014년 의결기관 통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2020년 이후 환경 변화를 사회, 정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기관, 지역 차원에서 살펴보고,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 등 지방과 지방자치의 변화 동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설정한 지방교육의 지향은 '허학 권무티 대학까지 관장하는 지방교육', '지역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을 원리와 지향 설정, 체제와 자치 단위, 제도적 보완사항을 논의하였다.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 즉 지방교육의 발전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지역교육생태계 안에서 제도가 호기적,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지방교육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참여, 지방교육자치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정책 의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교육자치제도, 환경 변화, 쟁점,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 지역교육생태계

* 박수정(202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환경 변화와 쟁점 탐색. 지방교육경영, 28(4), 151-178.

“문재인 정부시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2021년 전부 개정되고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개막된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대’, 특별자치도 출범과 광역화 추세 등 역동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행정 광역화 논의와 정책이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에서 추진되고 있고, 2025년 9월 30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5급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광역 시도의 통합 사례는 전례가 없기에 지방교육자치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방행정 논의에서 교육은 거의 보이지 않고, 교육행정에서도 지방행정 관련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자치, 지방행정 논의에서 교육의 목소리가, 교육 거버넌스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의 지방자치 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논의에 교육계가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과 교육의 더 깊은 연계 속에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주요 의제에 대한 학계의 공론화도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자치 상황 진단

‘자치분권 2.0 시대’를 넘어 ‘3.0 시대’를 논의하는 지방자치 - 제도 진전과 위상 정립이 요청되는 교육자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교차 영역 확대 (돌봄 등) - 교차 영역에서 지방자치 주도 현상 (교육발전특구, RISE 등)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초광역화 추진 - 지방자치, 지방행정 논의에서 목소리가 필요한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를 통한 전문적, 안정적 교육 운영과 성과 - 더 깊고 넓어진 수요, 지역과 주민에 더 가깝게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방향과 원칙

- 원칙 1 교육권을 보장하는 지방교육 발전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 원칙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교차 영역에서 교육자치의 주도성을 강화한다.
- 원칙 3 교육정책 거버넌스 전반에서 협력성, 교육성, 상향성을 강화한다.

* 박수정 외(2025),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보고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자치

특별자치시도 (교육 특례 발굴) + 광역 시도 통합 (광역 교육 통합 과제)
 국민 공통 기준에서 예외로 할 것은? 초광역 교육자치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자치시도 법률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 제정)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 제정)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제정)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제정, 2024 시행)

2026.1.30 현재 발의 법안

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대전특별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약칭 광주특별시)
3.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대구경북특별시)

※ 향후 내용 수정, 법안 폐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 행정통합 출발점에서 논의를 위해 활용함.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편제

초광역 행정체제에서 교육자치의 위치와 위상은?

대전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광주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대구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제1편 총칙 제2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설치·운영 제3편 경제과학중심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5편 보칙 제6편 벌칙 (총 314개 조항 및 부칙 12개 조항)	제1편 총칙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통합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편 보칙 (총 387개 조항 및 부칙 13개 조항)	제1편 총칙 제2편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제6편 보칙 제7편 벌칙 (총 335개 조항 및 부칙 13개 조항)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목적

초광역 행정통합의 목적은 타당한가? 목적에 집중하는 교육 특례?

대전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광주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대구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전의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 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여 대한민국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기업활동의 자유 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u>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u>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교육자치 규정

교육 특례의 초점과 범위는? 초광역 상황 적합성?

대전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광주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대구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제3편 경제과학중심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경제과학중심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2장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제3장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제4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4편 교육자치 제1장 교육감 제2장 교육행정 제3장 교육 운영의 자율성 제4장 기부금 제6편 통합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3장 인재육성	제4편 교육자치 제1장 교육감 제2장 교육재정 제3장 교육행정 제4장 교육 운영의 자율성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자치 규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절 교육위원 제3절 교육위원회 제4절 도교육감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6절 교육재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	--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초·중등교육 관련 조항

초광역 행정체제에서 교육 특례의 중점과 발굴 전략?

대전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광주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대구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제3편 제4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18조(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특례) 제119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120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21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제122조(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 제123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제124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125조(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지원) 제126조(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특례) 제127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28조(대학설립에 관한 특례) 제12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3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제13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특례)	제6편 제3장 교육 운영의 자율성 제70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71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72조(자율학교 운영 특례) 제73조(영재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75조(공립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7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제78조(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7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80조(지역특성과 교육적 다양성을 고려한 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81조(외국인 유학생 특례) 제82조(초·중등·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제83조(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방법,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특례) 제84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편 제4장 교육 운영의 자율성 제7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78조(유·초 중등학교의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제79조(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80조(초·중·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제81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82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83조(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84조(영재학교의 설립·운영) 제8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86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제87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88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 제90조(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고등·평생교육, 인재 관련 조항 초광역 행정체제에서 인재 육성의 중점과 주체?

대전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광주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대구경북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p>제3편 제4장 교육환경의 조성</p> <p>제132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특례)</p> <p>제133조(지역대학기금)</p> <p>제134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p> <p>제135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p> <p>제136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p> <p>제137조(인재양성지원단)</p> <p>+ 제246조(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p>	<p>제6편 제3장 인재육성</p> <p>제35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p> <p>제356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p> <p>제35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p> <p>제35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p> <p>제359조(고등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p> <p>제360조(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p> <p>제361조(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p> <p>제362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p> <p>제363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p> <p>제364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p> <p>제365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p> <p>제366조(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p> <p>제367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p> <p>제368조(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p> <p>제369조(우수 인재를 위한 조세 감면 등)</p> <p>제370조(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비자 특례)</p>	<p>제4편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p> <p>제91조(대학설립지도감독에 관한 특례)</p> <p>제92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p> <p>제9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 기능 확대에 관한 특례)</p> <p>제94조(대학 경쟁력 강화)</p> <p>제95조(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p> <p>제96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p> <p>제97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p> <p>제98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p>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교원 인사 관련 조항 초광역 행정체제에서 교원의 기존 근무지역 보장!

대전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광주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대구경북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p>제4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종전의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충청남도 교육청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p> <p>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26조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해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 근무 예정 지역 또는 학교 정하여 공개 전형시 10년 이내 정보 제한</p>	<p>제3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전라남도 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사상 합리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①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경상북도 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는 폐지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p>

■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교원 인사 관련 조항

교원 정원 자율, 지역 교원 선발, 관할 구역 승진?

광주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p>제74조(교원정원 운영 및 특별전형에 관한 특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 교원 정원 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특별시 정원 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10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증원된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제2항의 측정항목에 반영한다.</p>
<p>제75조(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①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이 법 제30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특별시교육감은 행정통합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 포함) 작성 시 종전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p> <p>④ 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 포함) 작성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른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⑤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교원 인사 관련 조항

교원 정원, 신규채용, 지역 근무, 교원 자격 신설 등 큰 특례?

대구경북특별시 법안 (26.1.30 발의)
<p>제75조(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의 추가 배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 및 국제인중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사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 제3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정원외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 규모 산출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p> <p>④ 특별시교육감은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 소재 일부 지역이나 일부 학교에서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⑤ 특별시교육감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의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특별시 소재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양성 및 검정·수여할 수 있다. 이 때 교원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p> <p>⑥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30조,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 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⑦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고등학교 내 산업계 수요를 위한 교과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특별시교육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과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6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공·사립학교 간 교원을 상호 파견할 수 있다.</p>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교육 특례 진단 (학교, 교원 관련)

행정통합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특례 외에 모든 학교급에 걸쳐 광범위한 특례 규정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교육기관 등 수월성을 강조하는 학교 특례 공통적
 지역 특성과 다양성,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직업계고 등은 일부 규정
 지역 주력 산업 연계, 외국인 유치와 혜택 초점
 지역에 따른 유치, 숙원 사업 반영 (국제고, 영재학교, 공립대안학교, 의대, 과학기술의학대학원 등)
 (대구경북, 광주) 교원 인사에 지역 특성과 수요 반영
 교육에 대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 (대학, 외국대학, 특목고, 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별 행정 통합 법안 : 교육 특례 쟁점 (학교, 교원 관련)

행정 통합의 목표 합치 - (설정된 목표가 타당하다면) 행정 통합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특례인가?
 학교급별 광범위한 특례 규정 - 교육의 공통 기준과 공공성을 준수하는 교육 특례인가?
 지역 정주 비중이 낮은 특목고 등 특례 규정 - 지역 정주, 사교육비를 염두하는 교육 특례인가?
 지역 유치, 숙원 사업 규정 - 지역의 우선순위 반영, 선별/국가적 조정이 불필요한 교육 특례인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와 교원 규정 - 시도 간 차이 분석/지역 정주 교원을 임용하는 특례인가?
 교육에 대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 우려 -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적 성과가 존중되는 특례인가?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26.2.2) 주제발표_학교·교원_박수정(충남대) ※ 인용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검토 사항

중앙과 지방의 교육 권한 배분 법제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사무 배분 기준과 사무 범위 명문화
 국가위임사무가 많은 교육 사무 속성 : 지역에서 발굴할 교육 특례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 vs 규제 완화 : 법을 계속 만들고 강화하면서 규제 완화와 자율성을 주겠다?
 지방자치 종속화 우려 : 중앙지방협력회의(교육감 배제), 지자체 주도 교육 사업(효과 검증 필요), 행정 통합도?
 광역단위 교육자치 : 초광역으로 더 크게? 기초교육자치 부활? 학교자치 강화? 일반 행정구역과 다른 구역?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의 과제 : 취학 전부터 대학까지 관장하는, 지역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으로

제언

(즉시) 1. 기초단위 교육행정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현재 광역만 필수) 2. 의회 교육전문위원 운영(제주 사례),
 3. 주민자치회/주민교육자치회 구성 권장 4. 학교 신설 등은 수요 검토 신중 접근(로비성 조항 엄금)
 장기적인 논의, 협의, 숙의 과정 필요 : 시도청-교육청 간, 통합 교육청 간 협의 필수, 주민 의견 수렴 필수
 단계별 접근 전략 : 시행기간 유예, 정책 연구 실시, 교육 특례 발굴 노력 + 지방교육자치 제도 개선과 함께
 신중한 교육 특례 접근 :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해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제도 발굴 노력 + 법률 근간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 실험 : 예) 단체장/교육감 2선 제한, 현직 초·중등교원 교육감 출마 허용, 교육의원제
 제도입, 위기지역 기초교육자치 활성화, 학교자치 연결, 주민(교육)자치회 등 지역에 따라 “절실한 방안” 도입

교육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이라는 목표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학습의 체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기준으로 그리고 '지역과 교육의 상생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행정이 교육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듯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 지방교육을 위한 재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지방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 의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교육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은 '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지방교육의 실태와 전망을 정확히 진단, 예측하고, 증거 기반의 지방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지방교육협력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이 지방교육 의제를 협의하며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의 지방자치 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논의에 교육계가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과 교육의 더 깊은 연계 속에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주요 의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의 공론화도 필요하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는 7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고 또한 과제를 남겼다. 10년 후, 「교육90년사」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정책의 창은 어떠한 방향으로 열리고 나아가게 될 것인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100년을 만들 것이다.

* 박수정(2025).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과 변화. 교육80년사. 한국교육학회. (근간)

“주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행정 통합, 교육 특례인가?

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전문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질 관리 필수
연구와 숙의, 시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질문들 1. 행정 통합을 왜 하는가? 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특례인가? 2. 행정 통합을 어떻게 하는가? 충분히 공유, 숙의, 연구된 교육 특례인가? 3. 지역 인재는 누구인가? 지역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인재를 위한 교육 특례인가? 4. 누가 지역에 사는가? 지역 인구가 유출되지 않을 교육 특례인가? 5. 학생은 잘 배울 수 있는가?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육 특례인가? 6. 교사는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좋은 교사를 선발하고 헌신하게 하는 교육 특례인가? 7. 학교는 모든 학생을 위한 배움의 공간인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실력과 인격을 갖추고 정의와 포용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 특례인가?

* 박수정(2026). 토론자료.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책토론회(26.1.31)